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10483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3274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피고(반소원고) 최○○ (58년생, 남)
수원시

변 론 종 결 2010. 11. 2.

판 결 선 고 2011. 1. 11.

주 문

1. 2009. 8. 28. 피고(반소원고)가 경남 산청군 소재 경호5교 강가의 제방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1.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109,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5. 대한카누연맹과 사이에 ◇◇◇레포츠라는 상호로 수상레저 사업을 하던 강□□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8. 28. 강□□이 운영하던 위 ◇◇◇레포츠에서 래프팅을 마치고, 인솔하던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 소재 경호5교 강가의 제방 위로 래프팅 보트를 운반하여 위 제방 갓길에 위 보트를 내려놓고 일어서다가 발을 헛디더 높이 약 2m의 위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왼쪽 발바닥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당시 인솔 가이드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보트를 위 제방의 가 쪽으로 붙여서 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를 비롯한 탑승자들이 위 가이드가 지시하는 지점에 위 보트를 내려놓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위 제방 갓길에 펜스나 기타 추락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약관 조항은 아래와 같다.

I. 일반조항

「용어의 정의」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II. 배상책임조항 의무조항

제2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제26조(피보험자) 제2장(배상책임조항) 제2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자
2. 제1호의 고용인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별도로 기재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음)의 각 기재와 영상, 신체감정축삭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보험사고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인 위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래프팅을 마치고 그 래프팅 보트를 제방 갯길로 운반하여 내려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보트의 사용 또는 관리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보험자측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 가이드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보트를 위 제방의 가 쪽으로 붙여서 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탑승자들이 위 가이드가 지시하는 지점에 위 보트를 내려놓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제방 갯길에 펜스나 기타 추락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래프팅 이용자들이 위 보트를 운반함에 있어 제방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설비를 하거나, 보다 안전한 다른 장소에 보트를 내려놓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이드 및 그 사용자인 강□□은 그와 같은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위 제방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해당 기간의 다음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6,387,77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10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기왕 치료비 : 피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는 1,565,7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192,741원, 총 진료비는 3,758,441원(=1,565,700+2,192,741)인데, 총 진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를 공제한 1,879,220원(= 3,758,441×0.5)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위 1,879,220원 한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¹⁾ 결국 피고가 원고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0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5~10호증의 각 기재

다. 향후 치료비 : 1,417,322원(지출시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로 본다).

[인정근거] 신체감정측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산상 손해의 계산 : 3,902,550원(=(6,387,779원+1,417,322원)×0.5)

마.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3,500,000원이 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7,402,550원(=3,902,550원+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 _____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